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12. 1. 2018나2289]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정상파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주영)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리프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담당변호사 전진홍)

【제1심판결】청주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6가합22728 판결

【변론종결】2021. 10. 13.

【주문】

]

-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도면에 따라 모터, 감속기 및 이를 조립한 리프터용 구동장치를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도면에 따라 제조된 별지 2 목록 기재 모터, 감속기 및 이를 조립한 리프터용 구동 장치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위 모터, 감속기 및 이를 조립한 리프터용 구동장치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피고는 피고의 공장, 사무실, 영업소, 창고에 보관 중인 위 나.항 기재 모터, 감속기 및 이를 조립한 리프터용 구동장치를 폐기하라.
- 라. 피고는 원고에게 341,4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21. 12. 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마.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3. 제1의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나.항, 다.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가.항, 나.항, 다.항에서 각 "모터, 감속기 및 이를 조립한" 부분 제외 및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나.항, 다.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가.항, 나.항, 다.항에서 각 "모터, 감속기 및 이를 조립한" 부분 제외 및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나.항, 다.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가.항, 나.항, 다.항에서 각 "모터, 감속기 및 이를 조립한" 부분 제외 및 피고는 원고에게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나.항, 다.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가.항, 나.항, 다.항에서 각 "모터, 감속기 및 이를 조립한" 부분 제외 및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 소외인은 1988. 1. 23.부터 1994. 4. 12.까지 ○○○○ 모터사업부/설계실에서 엘리베이터 모터 설계를 담당하는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소외인은 1997. 2. 11. 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00년경부터 리프터용 구동장치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원고는 2012. 12. 14. 국제산업렌탈 주식회사(이하 '국제산업렌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중속 리프터용 모터 및 감속기 등을 개발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원고가 자체 설계하여 개발하되, 투자비는 국제산업 렌탈이 부담하며, 위 계약으로 인해 개발되는 제품의 기술권, 특허권, 금형, JIG 등의 모든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3. 7.경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도면과 같은 모터, 감속기 및 이를 조립한 리프터용 구동장치(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구동장치'라 한다)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후 국제산업렌탈에 공급하였다.
- 이 사건 구동장치는 범용 모터(22Kw, 400V, 60Hz)와 범용 감속기를 사용한 기존 구동장치와 달리 리프터용으로만 설계, 제작되어 승압을 위한 변압기가 불필요하고, 기동운전 사양(17Kw, 346V, 70Hz)과 정격운전 사양(22Kw, 346V, 95Hz)을 이원화하여 모터의 효율이 높고 발열이 적으며, 소형화되는 등의 특징이 있어 초고층빌딩 건설 현장에서 널리 운용되고 있다.
- 나. 피고는 1997. 12. 4. 건설장비 제조, 시공 및 임대업, 장비개발 및 기술용역,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피고는 2014년경 초고층빌딩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리프터의 제작 및 판매·임대 등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2014년 86대, 2015년 260대, 2016년 4월경까지 60대 합계 406대의 이 사건 구동장치를 구매하였다(1대당 판매가격: 3,500,000원). 이 과정에서 원고는 2014. 2. 20. 피고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승강기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의 관련 기관들로부터 이 사건 구동장치를 이용해 제작한 리프터 완제품의 안전인증 서면심사를 받을 때 제출할수 있도록 피고에게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전자메일로 전송해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동장치 개발 이후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에게도 이 사건 구동장치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구동장치 공급처 다변화의 명목으로 이 사건 구동장치와 성능 및 사양 등이 동일한 구동장치를 중국에서 제조하여 수입하기로 하였다.

- 피고의 직원인 소외 2는 2015. 6.경 중국 푸동 소재 QIDONG DATONG MORTOR CO.,LTD(이하 '다퉁모터'라 한다)에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제공하였다.
- 피고는 2015. 9. 21.부터 2018. 1. 14.까지 다퉁모터로부터 리프터용 구동장치 63대를 수입하였다(1대당 구입가격: 2,358,000원). 한편, 피고는 2016. 5. 17.부터 2017. 3. 22.까지 거래업체들에 위와 같이 수입한 구동장치 중 45대가 포함된 리프터 완제품 22대를 판매하였다.
- 라. 피고와 소외 2는 위와 같이 다퉁모터에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인 원고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무죄판결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정475 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2021노899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 ①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2014. 2. 20.경 피고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첨부한 전자메일을 송부하였는데, 그 메일에는 소외인이 위 피고인에게 자신이 송부하는 자료(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를 '대외비로 관리해 줄 것을 고지하는 내용' 또는 '안전인증 서면심사를 위한 제출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② 더구나 소외인은 피고인 소외 2에게 제품(이 사건 구동장치)의 구체적인 치수를 삭제한 일반 PDF 도면을 보냄으로 써 피고인 회사의 안전인증 서면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제품의 소수점 이하 상세 치수가 기재되어 있는 실측도면(CAD 도면)을 보내었다.
- ③ 또한, 소외인으로서는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첨부한 전자메일을 보내는 대신, 해당 자료가 '대외비'라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제3자에의 유출이 보다 용이한 전자파일 형태로 원고의 중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였다.
 - ④ 소외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에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위 도면 파일이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일반 문서파일과 분리되어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다거나, 원고가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비롯한 중요 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안관리규정 또는 보안관리 담당자를 두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특정 기술정보나 영업자료를 비밀로 분류하여 그에 대하여 비밀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 ⑤ 원고가 소속 직원들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영업비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 등의 서면을 제출받았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소외 2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다든지,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다만, 이 사건 이후 원고는 거래업체에 안전승인 서면심사용 설계도면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파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거래업체로부터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받고 있다). ⑥ 원고의 보안경비시스템, 출입문의 시건장치 및 개인 컴퓨터에 설정된 비밀번호 등은 외부로부터의 침입 및 도난을 방지하고, 원고 자체의 보안유지 또는 사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비밀유지를 위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 등 특정한 정보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한 유지·관리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이 보안시스템이 설치된 사무실 내에 있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영업비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이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인식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⑦ 원고 측은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의 용도가 안전인증 서면심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이를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을(乙)의 입장일 수밖에 없어 피고인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구체적인 제품의 치수가 기재된 실측파일을 줄 수밖에 없었을 뿐더러, 그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비밀로서 관리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 마. 또한 피고가 2015. 12.경부터 2018. 5.경까지 중국 소재 YATAI HEAVY INDUSTRY INC LTD(이하 '야타이'라 한다)와 SHANDONG DAHAN CONSTRUCTION MACHINERY CO.,LTD(이하 '산동다한'이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형식번호 MS-2035, MS-2040 계열의 리프터는 아래 표 신고수량란 기재와 같다.
- 한편, 형식번호 MS-2035 계열의 리프터에는 구동장치가 2개씩, MS-2040 계열의 리프터에는 구동장치가 3개씩, MS-2035 계열의 리프터 중 리프터 케이지가 TWIN TYPE인 경우에는 구동장치가 4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수입한 리프터에 구동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전제로 구동장치 수량을 산정하면 아래 표 구동장치 수량란 기재와 같다.
- 수입신고 일자수입신고번호모델규격명무역거래처 상호신고수량구동장치 수량2015.12.14.1204115501828MBUILDING HOIST(MS2035 SINGLE LEFT CAGE)MAST OF BUILDING HOIST(650.4.5약타이 362015.12.23.1204115501895MBUILDING HOIST(MS2035 SINGLE LEFT CAGE)MAST OF BUILDING HOIST(650,4.5야타이6122016.1.4.1204116500022MBUILDING HOIST(MS2035 100M HEIGHT TWIN)야타이 282016.6.13.4165316060428MPASSENGER HOIST(MS2035S)야타이18362016.6.28.4165316060934MBUILDING HOIST(MS2035S)야타이12242016.7.6.4165316070227MBUILDING HOIST(MS2035S)야타이 8162016.7.6.4165316070227MBUILDING HOIST(MS2035 TWIN CAGE) 야타이 3122016.7.13.4165316070498MBUILDING HOIST(MS2035 TWIN CAGE) 야타이 142016.9.6.4165316090224MBUILDING HOIST(MS2035)야타이11222016.9.6.4165316090223MBUILDING HOIST(MS2040)야타이262016.12.23.4165316120878MCONSTRUCTION HOIST MS-2035S산동다한 6122017.2.24.4165317020847MCONSTRUCTION HOIST M S - 2 0 3 5 S 산 동 다 한 8162017.3.27.4165317031076MCONSTRUCTION HOIST MS-2035S산동다한 6122017.4.25.4165317040976MMS2035(SINGLE CAGE, 60M HEIGHT) 야타이 HEIGHT)야타이 21422017.5.1.4165317050062MMS2035(SINGLE CAGE, 60 M 362018.5.21.4165318050777MMS2035(45M.SINGLE RIGHT TYPE)야타이12합계111236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바. 피고가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다퉁모터로부터 수입한 구동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형식번호 MS-1535SR-60B 리프터에 대한 안전인증 서면심사 시 제출한 신청서와 피고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형식번호 MS-2035, MS-2040 계열의 리프터에 대한 안전인증 서면심사 시 제출한 신청서에 각 첨부되어 있는 구동장치의 사양서상 주요 사양과 성능(정격하중: 1500kg, 승강속도: 60m/min, 구동모터의 정격운전 사양: 22kw×2대, 감속기의 감속비율: 1/17.2125 등)이 이 사건 구동장치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다.
- 또한 위 구동장치의 구동부 도면의 경우 원고의 영문상호(JSPOWER)가 그대로 표시되어 있거나 원고의 영문상호만 지우는 등 이 사건 구동장치와 일치하고, 감속기 도면의 경우 각 부품의 지정번호, 부품명칭, 부품사양 및 감속기의 Housing과 축간거리 등의 형상 및 세부수치가 이 사건 구동장치와 일치하며, 모터 시험성적서의 경우 원고가 2013. 3. 5.경 이 사건 구동장치의 모터 성능시험을 의뢰한 하이젠모터(HIGEN MORTOR) 명의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고, 브레이크 시험성적서의 경우 하단에 원고의 영문상호(JUNG SANG POWER CO.,LTD)가 그대로 표시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구동장치와 동일하다.

【이유】

11. 인정사실

- 가. 원고의 대표자 소외인은 1988. 1. 23.부터 1994. 4. 12.까지 ○○○○ 모터사업부/설계실에서 엘리베이터 모터 설계를 담당하는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 소외인은 1997. 2. 11. 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 원고는 2000년경부터 리프터용 구동장치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 원고는 2012. 12. 14. 국제산업렌탈 주식회사(이하 '국제산업렌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중속 리프터용 모터 및 감속기 등을 개발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원고가 자체 설계하여 개발하되, 투자비는 국제산업 렌탈이 부담하며, 위 계약으로 인해 개발되는 제품의 기술권, 특허권, 금형, JIG 등의 모든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3. 7.경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도면과 같은 모터, 감속기 및 이를 조립한 리프터용 구동장치(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구동장치'라 한다)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후 국제산업렌탈에 공급하였다.
- 이 사건 구동장치는 범용 모터(22Kw, 400V, 60Hz)와 범용 감속기를 사용한 기존 구동장치와 달리 리프터용으로만 설계, 제작되어 승압을 위한 변압기가 불필요하고, 기동운전 사양(17Kw, 346V, 70Hz)과 정격운전 사양(22Kw, 346V, 95Hz)을 이원화하여 모터의 효율이 높고 발열이 적으며, 소형화되는 등의 특징이 있어 초고층빌딩 건설 현장에서 널리 운용되고 있다.
- 나. 피고는 1997. 12. 4. 건설장비 제조, 시공 및 임대업, 장비개발 및 기술용역,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피고는 2014년경 초고층빌딩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리프터의 제작 및 판매·임대 등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2014년 86대, 2015년 260대, 2016년 4월경까지 60대 합계 406대의 이 사건 구동장치를 구매하였다(1대당 판매가격: 3,500,000원). 이 과정에서 원고는 2014. 2. 20. 피고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승강기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의 관련 기관들로부터 이 사건 구동장치를 이용해 제작한 리프터 완제품의 안전인증 서면심사를 받을 때 제출할수 있도록 피고에게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전자메일로 전송해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동장치 개발 이후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들에게도 이 사건 구동장치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구동장치 공급처 다변화의 명목으로 이 사건 구동장치와 성능 및 사양 등이 동일한 구동장치를 중국에서 제조하여 수입하기로 하였다.

- 피고의 직원인 소외 2는 2015. 6.경 중국 푸동 소재 QIDONG DATONG MORTOR CO.,LTD(이하 '다퉁모터'라 한다)에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제공하였다.
- 피고는 2015. 9. 21.부터 2018. 1. 14.까지 다퉁모터로부터 리프터용 구동장치 63대를 수입하였다(1대당 구입가격: 2,358,000원). 한편, 피고는 2016. 5. 17.부터 2017. 3. 22.까지 거래업체들에 위와 같이 수입한 구동장치 중 45대가 포함된 리프터 완제품 22대를 판매하였다.
- 라. 피고와 소외 2는 위와 같이 다퉁모터에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피해회사인 원고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수원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무죄판결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정475 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2021노899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 ①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2014. 2. 20.경 피고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첨부한 전자메일을 송부하였는데, 그 메일에는 소외인이 위 피고인에게 자신이 송부하는 자료(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를 '대외비로 관리해 줄 것을 고지하는 내용' 또는 '안전인증 서면심사를 위한 제출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② 더구나 소외인은 피고인 소외 2에게 제품(이 사건 구동장치)의 구체적인 치수를 삭제한 일반 PDF 도면을 보냄으로 써 피고인 회사의 안전인증 서면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제품의 소수점 이하 상세 치수가 기재되어 있는 실측도면(CAD 도면)을 보내었다.
- ③ 또한, 소외인으로서는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첨부한 전자메일을 보내는 대신, 해당 자료가 '대외비'라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제3자에의 유출이 보다 용이한 전자파일 형태로 원고의 중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였다.
 - ④ 소외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에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위 도면 파일이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일반 문서파일과 분리되어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다거나, 원고가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비롯한 중요 기술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안관리규정 또는 보안관리 담당자를 두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특정 기술정보나 영업자료를 비밀로 분류하여 그에 대하여 비밀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⑤ 원고가 소속 직원들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영업비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 등의 서면을 제출받았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소외 2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다든지,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다만, 이 사건 이후 원고는 거래업체에 안전승인 서면심사용 설계도면 파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거래업체로부터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를 받고 있다). ⑥ 원고의 보안경비시스템, 출입 문의 시건장치 및 개인 컴퓨터에 설정된 비밀번호 등은 외부로부터의 침입 및 도난을 방지하고, 원고 자체의 보안유지 또는 사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비밀유지를 위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 등 특정한 정보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한 유지·관리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이 보안시스템이 설치된 사무실 내에 있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영업비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이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인식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⑦ 원고 측은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의 용도가 안전인증 서면심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이를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을(乙)의 입장일 수밖에 없어 피고인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구체적인 제품의 치수가 기재된 실측파일을 줄 수밖에 없었을 뿐더러, 그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비밀로서 관리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 마. 또한 피고가 2015. 12.경부터 2018. 5.경까지 중국 소재 YATAI HEAVY INDUSTRY INC LTD(이하 '야타이'라 한다)와 SHANDONG DAHAN CONSTRUCTION MACHINERY CO.,LTD(이하 '산동다한'이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형식번호 MS-2035, MS-2040 계열의 리프터는 아래 표 신고수량란 기재와 같다.
- 한편, 형식번호 MS-2035 계열의 리프터에는 구동장치가 2개씩, MS-2040 계열의 리프터에는 구동장치가 3개씩, MS-2035 계열의 리프터 중 리프터 케이지가 TWIN TYPE인 경우에는 구동장치가 4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수입한 리프터에 구동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전제로 구동장치 수량을 산정하면 아래 표 구동장치 수량란 기재와 같다.
- 수입신고 일자수입신고번호모델규격명무역거래처 상호신고수량구동장치 수량2015.12.14.1204115501828MBUILDING HOIST(MS2035 SINGLE LEFT CAGE)MAST OF BUILDING HOIST(650,4.5약타이 362015.12.23.1204115501895MBUILDING HOIST(MS2035 SINGLE LEFT CAGE)MAST OF BUILDING HOIST(650,4.5야타이6122016.1.4.1204116500022MBUILDING HOIST(MS2035 100M HEIGHT TWIN)야타이 282016.6.13.4165316060428MPASSENGER HOIST(MS2035S)이 부터 이 18362016.6.28.4165316060934MBUILDING HOIST(MS2035S)야타이12242016.7.6.4165316070227MBUILDING HOIST(MS2035S)야타이 8162016.7.6.4165316070227MBUILDING HOIST(MS2035 TWIN CAGE) 야타이 3122016.7.13.4165316070498MBUILDING HOIST(MS2035 TWIN CAGE)야타이 142016.9.6.4165316090224MBUILDING HOIST(MS2035)야타이11222016.9.6.4165316090223MBUILDING HOIST(MS2040)야타이262016.12.23.4165316120878MCONSTRUCTION HOIST MS-2035S산동다한 6122017.2.24.4165317020847MCONSTRUCTION HOIST M S - 2 0 3 5 S 산 동 다 한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8162017.3.27.4165317031076MCONSTRUCTION HOIST MS-2035S산동다한 6122017.4.25.4165317040976MMS2035(SINGLE CAGE,60M HEIGHT)야타이 21422017.5.1.4165317050062MMS2035(SINGLE CAGE,60M HEIGHT)야타이 362018.5.21.4165318050777MMS2035(45M,SINGLE RIGHT TYPE)야타이12합계111236 바. 피고가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다퉁모터로부터 수입한 구동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형식번호 MS-1535SR-60B 리프터에 대한 안전인증 서면심사 시 제출한 신청서와 피고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이 형식번호 MS-2035, MS-2040 계열의 리프터에 대한 안전인증 서면심사 시 제출한 신청서에 각 첨부되어 있는 구동장치의 사양서상 주요 사양과 성능(정격하중: 1500kg, 승강속도: 60m/min, 구동모터의 정격운전 사양: 22kw×2대, 감속기의 감속비율: 1/17.2125 등)이 이 사건 구동장치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다.

또한 위 구동장치의 구동부 도면의 경우 원고의 영문상호(JSPOWER)가 그대로 표시되어 있거나 원고의 영문상호만 지우는 등 이 사건 구동장치와 일치하고, 감속기 도면의 경우 각 부품의 지정번호, 부품명칭, 부품사양 및 감속기의 Housing과 축간거리 등의 형상 및 세부수치가 이 사건 구동장치와 일치하며, 모터 시험성적서의 경우 원고가 2013. 3. 5.경 이 사건 구동장치의 모터 성능시험을 의뢰한 하이젠모터(HIGEN MORTOR) 명의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 있고, 브레이크 시험성적서의 경우 하단에 원고의 영문상호(JUNG SANG POWER CO.,LTD)가 그대로 표시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구동장치와 동일하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